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법·제도 담당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연속 검사 금지 기준 적용 방법 알림



1. 한공조 2020-471호 및 한매협 2020-66호[「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20.12.4)]와 관련입니다.

2. '20.11.27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중 동일기관 연속 검사 금지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2회 이상 연속하여 검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방법 예시

구분	직전 검사일 및 검사기관	차기 검사일 및 검사기관	차차기 검사일 및 검사기관
예시1	'20.11.27 이전 (조합)	'23.11월 (조합 가능)	'26.11월 (조합 불가)
예시2	'20.11.27 이후 (조합)	'23.11월 (조합 불가)	'26.11월 (조합 가능)

붙임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문서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이사장



담당 박성국 대리 김정훈 기술지원팀장 한인성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무중 이민석 회장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1 - 79호 (2021. 2. 26)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1.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0.11.27.부터 시행 중입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련 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기계연구원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재)포항 산업과학연구원장,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이사장,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

주무관 최연기 환경사무관 정지민 과장 선결 2021. 2. 23. 문제원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904 (2021. 2. 2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6 팩스번호 044-201-7376 / youngchoi@me.go.kr / 비공개(5)

□ **개정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3호, '20.11.24. 공포, '20.11.27.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1호, '20.11.27. 공포·시행)

□ **주요 개정내용**

- ① **(권한의 위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정기점검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 ②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적정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마련(시행규칙 [별표 10의2])
- ③ **(지정절차)**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검사기관 지정절차 구체화(시행규칙 제41조의4, 제41조의5)
- ④ **(준수사항)** 동일 시설에 대한 연속검사 금지, 검사거부 금지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시행규칙 제41조의6[별표 10의3])

- ◇ 동일 시설에 대하여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연속검사 금지
(다만,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2회 이상 연속하여 검사한 경우에 한정)
- ◇ 휴업 또는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거부 금지
- ◇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 외 검사업무 금지

- ⑤ **(정기점검)**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주기(매년 1회) 및 주요 점검사항* (시행규칙 제41조의7)

* 지정요건 충족 여부, 정도관리 이행여부, 검사기준 및 방법의 준수여부 등

- ⑥ **(기 타)**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